

문서번호	자치행정과-8477
결재일자	2016.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23호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허윤미	강경애	강호철	고재식	04/08 김경호
협 조				

**2016년 공공시설 유희공간
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행 정 관 리 국
[자 치 행 정 과]

공공시설 유희공간 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서울시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 구 공공시설 유희 공간 공유의 야간·주말 개방 확대, 이용실적 미흡 등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센티브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2016년 자치회관 운영 기본계획 (구청장방침 제92호, 2016.1.22)
- 2016년 사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추진계획(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사업)
- 서울시 자치행정과 - 6428(2016. 3. 22)

II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년 연중
- 추진방향 및 내용 :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기준에 의거 추진
 - 인센티브 평가개요(인센티브 평가지표 : 별첨 1)

- ✦ 평가대상기간 : 2016. 2. 1. ~ 10. 31 (평가시기 10월말)
- ✦ 평가 분야 : 공공시설 유희공간 공유(55%), 공유촉진사업추진(45%)
- ✦ 평가 방법 : 서면 평가가 원칙, 현장 평가 및 만족도 설문조사 병행
- ✦ 인센티브 : 500백만원
- ✦ 수상기준 : 목표점수(유희공간 공유 42점, 공유촉진 사업32점) 모두 달성시 수상구로 선정(절대평가)
(해당 자치구에 시상금 1/N로 균등 지급)

● 평가지표 변경내역

지표명	배점	2015년 만점기준	2016년 만점기준	추진현황	비 고
시민 이용실적(월 평균, 공간별)	10점	12회	13회	21회	상향조정
개방공간수(월 평균)	4점	40개소	42개소	44개소	상향조정
주민센터 대비 개방공간수	6점 ⇨ 5점	2.5	2.7	2.9	상향조정
개방공간 대비 야간·주말 개방비율	9점 ⇨ 10점	55% (25개소)	60% (27개소)	59% (26개소)	상향조정
신규 개방공간 추가 발굴 건수	3점 ⇨ 5점	3개이상	3개이상	0	취약지표
공공시설 민간운영	7점 ⇨ 6점	15%이상	17%이상	0	취약지표

Ⅲ 유휴공간 개방현황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과 연계한 개방 : 2013년부터 시행

공간 개방 현황(2016.3월 현재) : 총 44개소 (공간개방 현황 별첨 3)

개방시설	공간 유형(44개소)	열린공간(평일 주·야간+주말) 운영
동주민센터 (15개소) 및 광진주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 당 : 15개소 ◦ 회 의 실 : 11개소 ◦ 강 의 실 : 9개소 ◦ 기 타 : 9개소 	26개소

2015년 이용 실적 : 8,524건(공간 당 월평균 16건)

※ 공공시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상 이용건수임.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

1 공공예약시스템 모니터링 (44개소)

중점 모니터링 기간 : 2016. 4. 4 ~ 4. 15

모니터링 내용 : 자치회관 유휴 공간 개방정보 구체화 및 현행화

● 개방 공간 사진, 화차등록, 요금, 담당자 정보 적정성 및 상세설명 등록여부 등

정비 방법

● 정비 기간 내 자치회관 담당자별 예약관리시스템 자체 모니터링 및 구담당자 점검

2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실태 점검

- 조사 기간 : 2016. 4. 18 ~ 4. 22
- 조사 방법 : 주민자치팀 2인 1조로 자치회관별 현장 조사
- 조사 내용
 - 유휴공간 개방 현황 시스템과 일치 여부 및 예약 실적 확인
 - 자치회관 유휴공간 개방 담당자 및 이용자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언제나 열린 공간」 공공시설 민간운영 및 위탁 가능 공간 협의 등
 - 자치회관 외부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 점검

3 개방공간 추가발굴

- 추진목표 : 3개소 (♣ 서울시 평가지표 : 3개소)
 - 5월 : 1개소 신규개방(능동 지하1층 강의실)
 - 6~7월 : 2개소 발굴
- 추진시기 : 2016. 4월 ~ 10월
- 발굴대상 : 동 주민센터 시설 중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신규로 발굴하거나, 커뮤니티 공간 등 기 개방하고 있지만 예약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시설

※ 추가 발굴 자치회관에 대하여 자치회관 평가 시 가점 등 부여

4 야간 및 주말 확대 개방

- 추진목표 : 27개소 (♣ 평가지표 만점기준 : 개방공간수 대비 야간주말 개방공간수 - 60%이상)
- 추진현황 : 26개소
 - ▶ 기존 25개소에서 2016.3월부터 1개소(화양동 대강당) 증가
- 추진시기 : 2016년 4월 ~ 10월
- 추진방법
 - 기존 「언제나 열린 공간」운영 공간(25개소) : 바뀐 지표에 따라 변경 운영
 - ▶ 야간 : 22시(주중 1회 이상) ⇨ 21시(주중 2회 이상)
 - ▶ 주말 :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1일 8시간 이상 개방 ⇨ 주말 합쳐 8시간 이상 개방

● 1개소 추가 지정하여 확대 운영

- ▶ 자치회관 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언제나 열린 공간 운영시 가점 반영
- ▶ 야간 및 주말 개방시 직원 근무 부담 가중 및 공공시설 민간운영 지표 신설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자원 봉사자를 운영자로 지정하여 위탁운영

■ 주말 · 야간 개방시 근무직원 지원대책

- 대상기간 : 2016. 1월 ~ 12월
- 야간, 주말 근무시 예산 범위 내에서 **급량비 지급(1인 7,000원)**
- 소요예산 : 약840천원
 - ▶ 산출내역 : 월평균 10회 x 12개월 x 7천원(2015년 75건/525천원 지급 - 월평균 6.25회)
 -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자치행정역량강화-주민참여활성화-자치회관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5 공공시설 민간운영 추진

■ 추진목표 : 8개소 (♣ **평가지표 만점기준 : 개방공간수 대비 민간운영공간수 - 17%이상**)

■ 추진시기 : 2016년 5월 ~ 10월

■ 추진 방법

- 민간운영 자치회관에 보안장치 분리공사 지원(서울시 시설비로 우선지원 예정)
- 3~4개동(8공간)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 체결 후 관리위탁
- 민간 운영자(자원봉사) 인력 활용(**별첨2 자치회관 운영협약서안**)
- 민간 운영자 지원금액

구분	운영시간	지원금액
평일 야간개방	18:00 - 22:00	2만원
공휴일/토요일/일요일 개방	09:00 - 18:00(최대8시간)	기본4시간이내 : 2만원 추가 시간당 5천원합산 지급

※ 단, 유희공간 예약사이트에 신청분에 한하며, 예산지원 범위내에서 지원함.

■ 소요예산 : 약 3,840천원

- 산출내역 : 월평균 6회 x 8개월 x 4명(4개동) x 20천원(4시간까지 실근무시)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자치행정역량강화-주민참여활성화-자치회관 운영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6 이용실적 제고

추진목표 : 공간별 월 평균 이용실적 13회이상

(♣ 평가지표 만점기준 : 월 평균 이용실적 13회 이상)

추진시기 : 2016년 2월 ~ 10월

추진 방향

- 매월초 자치회관별 전월 이용실적 및 당월 예약현황 통보하여 월평균 실적 13회 이상 독려
 - ▶ 직능단체 각종 회의 및 동아리 이용실적 등 포함
 - ▶ 자치회관 문화 프로그램 제외
- 지속적 홍보를 통한 주민이용 활성화
 - ▶ 동 청사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아차산메아리, 전광판, 보도자료, 주민센터 게시판,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통합적 홍보 추진
 - ▶ 자치회관 이용 동아리, 마을공동체 모임, 각 동 직능단체 및 시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V 행정사항

공공 예약 시스템 이용 방법 등 교육 참석 철저

- 교육일시 : 2016. 5월초
- 교육장소 : 서울시청
- 교육대상 : 구·동 자치회관 유희공간 담당자

붙임 1.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인센티브 평가지표 1부.

붙임 2. 민간운영 협약서(안) 1부.

붙임 3. 공공시설 유희공간 개방현황(3월말 기준) 1부. 끝.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목표점수						
1개	5개	9개		55	47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55)	시민 이용활성화 (13)	시민 이용실적(10)	○ 1개 공간별 월평균 이용실적	지수	10	10					
			13회 이상	10							
			12~13회미만	9							
			11~12회미만	8							
			10~11회미만	7							
			9~10회미만	6							
			8~9회미만	5							
			7~8회미만	4							
			6~7회미만	3							
			6회미만	2							
	시민 이용 만족도(3)	○ 시정모니터단 활용 만족도 조사 결과	지수	3	2						
		4~5점	3								
		3~4점 미만	2								
	유휴공간 개방실적 (24)	유휴공간 운영실적(19)	유휴공간 운영실적(19)	○ 개방공간 수(월평균)	지수	4	4				
				42개소 이상	4						
				38~41개소	3						
				34~37개소	2						
				34개소 미만	1						
				○ 주민센터 대비 개방공간 수	지수			5	5		
				2.7이상	5						
				2.5~2.7미만	4						
				2.3~2.5미만	3						
				개방공간 추가발굴(5)	개방공간 추가발굴(5)			개방공간 추가발굴(5)	○ 개방공간 대비 야간·주말 운영실적	지수	10
		60% 이상(27개소)	10								
		55~59% 미만(25개소)	8								
		50~54% 미만(22개소)	6								
		45~49% 미만(20개소)	4								
44% 이하(19개소)		2									
신규개방		3개소이상	2개소			1개소	5		4		
야간주말(3개소이상)		5									
야간주말(2개소)		4	3								
야간주말(1개소)		3	2	1							
공공시설 민간운영(6)	공공시설 민간운영(6)	공공시설 민간운영(6)	○ 공공시설 민간운영	지수	6	3					
			17% 이상(8개소)	6							
			15%~17% 미만(7개소)	5							
			13%~15% 미만(6개소)	4							
			11%~13% 미만(5개소)	3							
11% 미만(4개소)	2										
예약시스템 관리(5) - 개방정보 정확도	예약시스템 관리(5) - 개방정보 정확도	예약시스템 관리(5) - 개방정보 정확도	○ 정보 구체화 및 현행화 비율	지수	5	4					
			90~100%	5							
			80~89%	4							
			70~79%	3							
			60~69%	2							
60% 미만	1										
자치구 특화사업(7) (정성평가)	자치구 특화사업(7) (정성평가)	자치구 특화사업(7) (정성평가)	○ 우수사례 - 3건이내 (6점)		7	5					
			○ 신규 개방 공간 야간주말 개방 사례 포함시 가점(1점)								
			○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활용 공간 관리 사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자치회관 운영 협약(안)

「서울특별시 00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00동 자치회관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내용과 시간)① 자치회관 운영 내용은 아래 각호를 말한다.

1. 자치회관 시설·물품의 유지 및 관리
2. 자치회관 보안 관리(출입문 개폐등)
3. 자치회관 청결 유지
4. 자치회관 예약 현황 파악 및 출입자 관리
5. 전열기구 관리 등 화재 예방 등

② 자치회관 운영 시간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평일 : 09:00~22:00
2. 주말 : 토·일요일 8시간 이상
3. 다만,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운영자가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새벽시간에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부담)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자치회관 운영비로 매월 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운영비를 매월 말에 운영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영비는 동장이 1/2,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2을 부담한다.

제4조(운영자의 의무)① 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진다.

② 운영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 및 예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서울특별시 00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기간) 운영자는 2016.7.1.부터 2017.6.30.까지(2년) 00동 자치회관을 운영한다.

제6조(이견 조정)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운영자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제7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2017.6.30.까지 지속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① 동장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내용과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동장과 운영자는 본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최소 30일전에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서 작성 및 보관) 협약서는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운영자간 합의를 거쳐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5월 일

00구 00동장 이길동

00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길동

00동 자치센터 운영자 홍길동

(00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관 운영 분과위원장)
